

전주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1가단216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변 론 종 결 2023. 3. 30.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7. 9. 8.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26,86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6. 2. 22. B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7. 9. 8. 기준 미변제 대출금은 135,000,000원이며, 2023. 1. 31. 기준 미변제 원리금은 합계 167,710,728원에 이른다. 원고는 또한 2016. 6. 24. 주식회사 C에 2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7. 9. 8. B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7. 11. 2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B에서 피고로 변경, 근저당권자: D조합)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또한 2019. 10. 8.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을 설정하였다.

다. B의 무자력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은 [별지2] 부동산 내역 표 기재와 같고, B 소유 보통예금은 2020. 8. 10. 기준으로 3,018,682원에 이른다. 한편, B이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 50,000주(액면가 1주당 10,000원)를 보유하고 있으나 위 회사는 부채가 자본을 초과한 완전자복잠식상태이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은 [별지3] 소극재산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9,0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것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무자인 B이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채무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도 없던 상황이었는바,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시키는 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B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누구보다 B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가 기존 근저당권을 인수하였고 이에 더하여 선의의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해졌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취소 및 가액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3,5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설정된 D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26,640,000원이므로[갑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023. 2. 16.자 금융거래정회보신)], 이 사건 증여계약은 26,860,000원(53,500,000원 - 26,64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곤

별지